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 행정규칙명

-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지침

### ◇ 제·개정 이유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개정사항('20. 7. 1. 시행)을 반영하여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국내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기재항목에서 선택 기재항목으로 변경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항목에서 제외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을 제출하고, 법정대리인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인감 또는 서명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명서류로서 요구하는 공증서에 대해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국내법인이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기재항목에서 선택 기재항목으로 변경 (안 III. 제출인별 특허고객번호 발급방법 및 기준 - 1. 국내법인)
- 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단독으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제출 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항목에서 제외 (안 III. 제출인별 특허고객번호 발급방법 및 기준 - 4. 외국법인)
- 다. 미성년자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제출 시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을 제출하고, 법정대리인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인감 또는 서명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 미성년자 등 확인사항)